
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(채이배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8537 |
|----------|------|

발의연월일 : 2017. 8. 16.

발의자 : 채이배 · 이동섭 · 정동영

조배숙 · 민병두 · 박선숙

정인화 · 신용현 · 박주현

김삼화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보험업법」에 따르면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 사항을 반기별로 공시할 의무가 있음. 그러나 미이행 시 과태료, 과징금 등의 경제적 제재조항이 없어 이행에 대한 강제력이 부족함.

이에 보험대리점이 공시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조항을 마련하여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(안 제209조제5항제3호 신설).
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4821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9조제5항제3호부터 제11호까지, 제11호의2 및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2호까지,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87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<p>법률 제14821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09조(과태료) ① ~ ④ (생 략)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1. · 2. (생 략) 2의2. (생 략) 2의3. (삭 제) <u><신 설></u> <u>3. ~ 11.</u> (생 략) <u>11의2.</u> (생 략) <u>12. ~ 17.</u> (생 략) ⑥ (생 략)</p> | <p>법률 제14821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09조(과태료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--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 2의2. (현행과 같음) 2의3. (현행과 같음) <u>3. 제87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</u> <u>4. ~ 12.</u> (현행 제3호부터 제11 호까지와 같음) <u>12의2.</u> (현행 제11호의2와 같음) <u>13. ~ 18.</u> (현행 제12호부터 제 17호까지와 같음) ⑥ (현행과 같음)</p> |